

# 중소기업 부담해소 매뉴얼

##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 최대 100%까지 폐기물부담금이 감면되며, 플라스틱 제품 출고년도에 따라 감면율은 상이합니다.

※ 2020년 출고분부터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해 최대 70% 감면

## 중소기업 감면 기준

【 관련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별표2 비고 5,6 】

감면 대상기간	감면 대상	감면 내용
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1년 분까지 출고된 제품	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자	- 연간 매출액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감면 • 30억 미만 ⇒ 70% 감면 • 30억 이상~100억 미만 ⇒ 60% 감면 • 100억 이상~200억 미만 ⇒ 연간 매출액에 따라 감면을 차등 적용
②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분까지 출고된 제품	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매출액 300억 미만 제조업자	- 연간 매출액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감면 • 30억 미만 ⇒ 100% 감면 • 30억 이상~100억 미만 ⇒ 70% 감면 • 100억 이상~300억 미만 ⇒ 연간 매출액에 따라 감면을 차등 적용
③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6년 분까지 출고된 제품	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자	- 연간 매출액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감면 • 30억 미만 ⇒ 100% 감면 • 30억 이상~100억 미만 ⇒ 70% 감면 • 100억 이상~200억 미만 ⇒ 50% 감면
④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 분까지 출고된 제품	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자	- 감면대상 해당년도의 산정된 폐기물부담금의 50%를 감면 • 200억 미만 ⇒ 50% 감면

※ 플라스틱 제조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은 10억원 또는 10톤 감면과 별도로 추가 감면

## 중소기업 감면 확인 첨부 서류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“중소기업확인서”  
 →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<http://sminfo.mss.go.kr/> 에서 발급가능
- 연간 매출액 증빙서류
  - ①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
  -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서류



#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

□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<http://sminfo.mss.go.kr/> 접속



## ①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

- ①-1 상단메뉴 [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] → [온라인 자료제출하기] 클릭
- ①-2 기업유형 선택(법인 또는 개인) → 자료전송 프로그램 설치

## ② 원천세 온라인 자료제출(업로드)

②-1 2019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을 온라인 제출(업로드)

※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들은 파일명이 같을 경우 하나만 업로드 됩니다.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의 이름을 월별로 다르게 만들어주세요.

**① 온라인 자료제출하기**
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의 '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'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'온라인 자료제출하기' 버튼을 클릭합니다

**② 자료 제출하러가기**

- '자료 제출하러 가기' 클릭시 온라인 자료 제출 프로그램이 설치되며, 설치 완료 후 자동으로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.
- 자동설치가 안될 경우 아래의 수동설치를 이용하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**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**

온라인자료제출하기

자료제출(법인기업)    자료제출(개인기업)

☑ 제출서류목록

제출서명	자료제출명	부속서류	관련된 제출 프로그램
1. 결산 연도별 원천세 신고서(법인세)	[법인세신고서 제출용]	없음	원천세 자료제출용
2. 결산 연도별 원천세 신고서(개인세)	[개인세 신고서 제출용]	없음	원천세 자료제출용
3. 원천세 신고서(법인세)	[법인세 신고서 제출용]	없음	원천세 자료제출용
4. 원천세 신고서(개인세)	[개인세 신고서 제출용]	없음	원천세 자료제출용

### ③ 회원가입

③-1 메인화면 우측 상단 [회원가입] → [일반회원] 클릭

③-2 약관 동의 → 개인실명인증 → 이용자 정보와 기업정보(필수) 입력

※ 회원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합니다.

### ④ 신청서 작성

④-1 메인화면 상단 [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] → [신청서 작성]을 클릭

④-2 [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]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

④-3 주요 재무정보,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, 경쟁 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, 상시 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별로 입력

④-4 신청자 정보 입력 후 [신청서 제출] 버튼 클릭

### ⑤ 확인서 발급

⑤-1 [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] → [확인서 출력/수정] 메뉴에서 인쇄할 확인서 선택 → [확인서 출력] 버튼 클릭

### □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 연락처

확인서 발급 전반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☎ 1357

회원가입, 온라인 자료제출 등
☎ 02-3215-2674

중소기업기본법 해석
☎ 042-481-4541

중소기업 범위 규정 등 제도운영
☎ 042-481-8913, 1669